## 융복합교육센터 운영규정

[제정 2021.1.13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시행 세칙(II) 제18조의 2에 따라 융복합교육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조직 및 업무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센터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의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한다.

- 1. 센터를 대표하고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융복합교육센터장을 둔다.
- 2. 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- 3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융복합전공위원회를 둔다.

제3조(운영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신설, 폐지, 변경에 관한 업무
- 2.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교과목의 편성,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업무
- 3. 교과목 개설 및 분반, 폐반(합반)에 관한 업무
- 4.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강의시간표 작성에 관한 업무
- 5.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수강신청, 수업 진행 및 각종 시험에 관한 업무
- 6.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구분 변경 및 졸업사정에 관한 업무

제4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시경교양대학 융복 합전공위원회와 교무처 학사제도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시경교양대학 장과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